

바

성폭력

Vol. 7
2013 하반기

1

- 6 **기획특집 [차별]**
- 7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 11 차별금지법의 쟁점
- 18 성차별금지법 논의 현황과 주요내용

2

- 21 **쟁점과 입장**
- 22 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 27 법정에서 시작한 낙태이야기
- 30 **대안 읽기**
- 30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긴 여행에 함께해주세요
- 35 **프리즘 [심대]**
- 36 여학교 문화 속 여학생들의 섹슈얼리티 좌담회
- 43 연애 권하는 사회 속 심대의 연애
- 48 연애와 조건만남과 성폭력의 경계
- 52 **성문화 읽기**
- 52 지금은 '역차별(back-lash)'의 시대!?
- 56 트랜스/젠더라는 스펙터클
: 목욕탕을 찾은 여성의 젠더를 둘러싼 소란, 호들갑, 혹은 정치학

3

- 62 **생존자 말하기**
- 62 책 한 권을 털었을 뿐, : 삶의 마무리가 아닌 첫걸음
- 67 **사례연구**
- 67 약물과 성폭력
- 72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 72 투 마더스 - 불안정하지만 아름다운 균형

4

- 76 **권말코너**
- 76 인공임신중절 처벌에 대한 만평
- 78 **아낌없이 주는 나무**



1

기획특집 [차별]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차별금지법의 쟁점

성차별금지법 논의 현황과 주요내용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차별 사유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는 다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인권과 반성폭력 운동에 미칠 영향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차별금지, 당연하지만 어려운 과제

“차별하지 말라.” 민주주의사회에서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평등’과 ‘차별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주제가 바로 차별이다. 평등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차별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 대출 기준의 예를 들어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같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대우가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객관적인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도 모든 고령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령을 근거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 대신, 인종, 성별, 장애, 혼인여부, 학력 등의 사유를 대입시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차별은 곧 소수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언제나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은 단지 어떤 속성을 가진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지위는 더욱 악화되고 편견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에서 점점 배제된다. 차별이 차별을 낳는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침해와 차별

이 사례에서 차별이 고전적인 인권침해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은행이 아무런 기준 없이 대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라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변적이다.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연령, 거주지역, 혼인여부, 학력 등은 채무상환능력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기준으로 차별을 한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에는 각종 특별대출 상품이 있다. 의사 등 전문직종을 위한 특별대출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의사라는 집단을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일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신용유의자 중 학자금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을 구제하고자 특별대출상품을 개발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일까? 다른 신용유의자가 대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문제제기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차별의 주체가 국가일 수도 있지만,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은 사기업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런데 주체가 사기업일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은행의 대출정책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적 영역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여 은행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인의 차별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필요성

이처럼 차별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인권위 진정 건수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징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참고 지냈던 문제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문제는 민사배상 등 기존의 법적 규제로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차별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법리상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손해배상의 적용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가들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을 규정하고, 차별문제의 해법을 차별시정기구에 맡기고 있다. 차별시정기구는 보통 인권위원회 또는 평등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차별시정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종, 성별, 장애 등 각 차별사유별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하나의 차별시정기구로 통합

차별금지법의 쟁점

조혜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되는 추세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의 중지, 피해회복이나 배상을 위한 조치 등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대개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조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별시정기구는 조정이나 중재라는 방법도 적극 활용한다. 차별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으로 보고, 그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시정기구의 문제해결방법은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문제 영역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고, 처벌보다는 행위의 중지나 정책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차별행위의 특성이 고려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만능상자가 아니다. 차별이 무엇이라고 명확히 정하는 법도 아니다. 다만, 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차별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구성, 권한, 기능 등을 정하는 내용의 법이다. 차별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고 차별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봐도 좋다. 그래서 차별시정기구에 강력한 법적 강제조치 대신, 권고, 조정, 중재 등의 비강제적이고 유연한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문제가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그 해결을 맡겨야 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차별의 속성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고착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 이미 선택지는 분명해진 것이다.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안에 대한 재계 및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자 곧바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의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사실상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는 국내 국외의 비판을 크게 받았다.

차별금지법은 그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다가, 19대 국회에 들어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을 각 대표발의의원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발의됨으로써 올해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이에 일부 보수개신교계는 ‘통제되지 않는 성(性)’에 관한 두려움을 환기시키거나 사회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청소년의) 임신출산’, ‘전과’,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반대운동

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고, 결국 김한길, 최원식 대표발의안이 발의된 지 두 달여 만인 올해 4월,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두 법안의 발의가 철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 때문인 것처럼 비추어져 왔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식의 반(反)인권적이고 그 자체로 차별적인 목소리가 법안을 철회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무엇보다 차별의 개념이 확장되고 피해구제가 실질화되는 것에 대한 재계와 기득권층의 거부감, 평등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관심과 무기력함이 깔려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쟁점

차별금지사유

사회마다 시대마다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혼인 여부 등 차별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사유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유들을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로서 법에 명시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은 법으로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2007년과 2013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차별금지사유를 넣느냐, 빼느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특정 사유는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안 된다’는 차별적인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어떠한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별들을 실효성 있게 해소해나가기 위해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 역시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사유들이 명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고 있다.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복합차별 등을 차별의 유형으로 정의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차별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성차별)과 관련하여 이론이 만들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간접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으로 명확히 도입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괴롭힘은 보통 자유권, 인권에 대한 침해로 분류되지만, 특정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지닌 피해자가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되는 차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별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민족이 다르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점차 고립되거나 배제되어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 또한 동등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만을 ‘성희롱’으로 개념화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적인 언동을 이용하지 않지만) 성별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출신민족, 피부색, 가족형태 등 다양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은 차별의 성격 또한 지닌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차별사유가 중첩적 교차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하는 복합차별의 개념은 현실에서의 차별이 단순히 한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차별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틀 역시 이러한 복합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차별의 구제와 예방

차별금지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구제에 관한 규정들은 크게 차별시정기구에서의 권고, 조정 등과 같은 비사법적(非司法的) 구제수단과 법원의 판결과 같은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을 규정 한 것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은 그 효력이 약한 대신 차별을 폭넓게 인식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모색한다. 사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차별 피해자를 위한 특례조항들을 어디까지 인정 할 것인가가 첨예한 쟁점이 된다. 차별 피해자가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과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등이 논의된다. 또한 단순히 사후에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다양한 내용의 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제안된다.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차별 등 악 의적인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로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악의적 차별을 실 효성 있게 예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에는 그 외에도 차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재판에서 차별 피해자를 보조 하거나 대신 제소,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이 존재한다.

차별금지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권 시민사회는 2010년 말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 법제정연대’를 결성하고 한국사회 내 차별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반 차별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정 부는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단순히 국제사 회에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안 만드느니만 못하다. 평등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재정 령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차별 당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경청하고 성 찰해나갈 때 형식적인 법이 아닌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성차별금지법 논의 현황과 주요내용

백미순 | 본 상담소 소장

성차별금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 25일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세계 136국 중 111위이다. 112위인 바레인, 115위인 카타르 등 아랍 국가들과 비슷한 최하위권의 수준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순위가 2010년 104위에서 2011년에는 107위, 2012년 108위, 올해 111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심각하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공공분야에서의 낮은 대표성 등 사회 전영역에서의 여성이 처한 불평등의 상황은 성차별금지를 통한 전향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폭력은 역사

적으로 존재해 온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폭력은 차별의 형태이자 인권침해이며 여성폭력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목하고 치안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자 성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을 포함한 남녀차별기준에 관한 사항, 남녀차별에 대한 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남녀차별에 관한 시정신청사건의 조사 및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2001년 남녀차별 사항의 조사 및 시정권고와 남녀차별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

그런데 2005년 6월 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성희롱 및 성차별의 시정 및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같은 해 12월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성차별개선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시정업무, 성차별의 정의나 기준, 성차별 특성에 맞는 구제절차 등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성차별금지법의 모법이 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별법인 성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예에 비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

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입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에 광범위한 성차별의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성희롱이 차별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문제이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담기지 않은 성희롱 양태 및 구제와 시정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에 함께 담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성차별 금지에 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성차별에 대한 상세한 정의나 유형, 차별의 예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한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100가지 젠더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성차별금지법, 무엇이 담기나?

최근 19대 국회에 들어서 김상희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률 시안이 마련되면서 성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안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법에 담길 대략의 내용은 법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다. 근로자는 고용계약 관계에 있거나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 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돌봄노동자들을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자 혹은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확장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을 성차별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성별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간접차별과 성별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언동, 비하, 괴롭힘 등의 gender harassment, 성별을 이유로 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이용 분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차별이 적용되는 영역을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방송·신문 등 언론기관, 금융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용, 종교나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율할 법 조항이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차별의 이유와 관련하여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외에, 여기에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차별과 같은 개념 안에 묶일 수 있는 것인가, 성차별과 동일한 양상과 특성을 갖는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차별시정기구의 권고 이행에 강제성이 없는 점을 보완하여 구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성차별, 성희롱 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등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그 밖에 성차별, 성희롱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법원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차별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가

해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배분,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을 벌칙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도 논의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과 별도로 모법인 차별금지법과 입법 선후관계의 문제도 논쟁적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0여 년간 제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별정체성이나 사상의 자유 등 몇 가지 사유에 대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제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동하는 주요한 그룹 중의 하나가 여성계인데, 성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먼저 이뤄질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략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먼저 힘을 모으고 후에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성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가 시정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무조건 서두르기보다 각 논쟁점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이 적용될 현장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서두르되 충분한 절차와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 어렵지만 지켜야 할 절차이다.

2

쟁점과 입장

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법정에서 시작한 낙태이야기

대안 읽기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프리즘 [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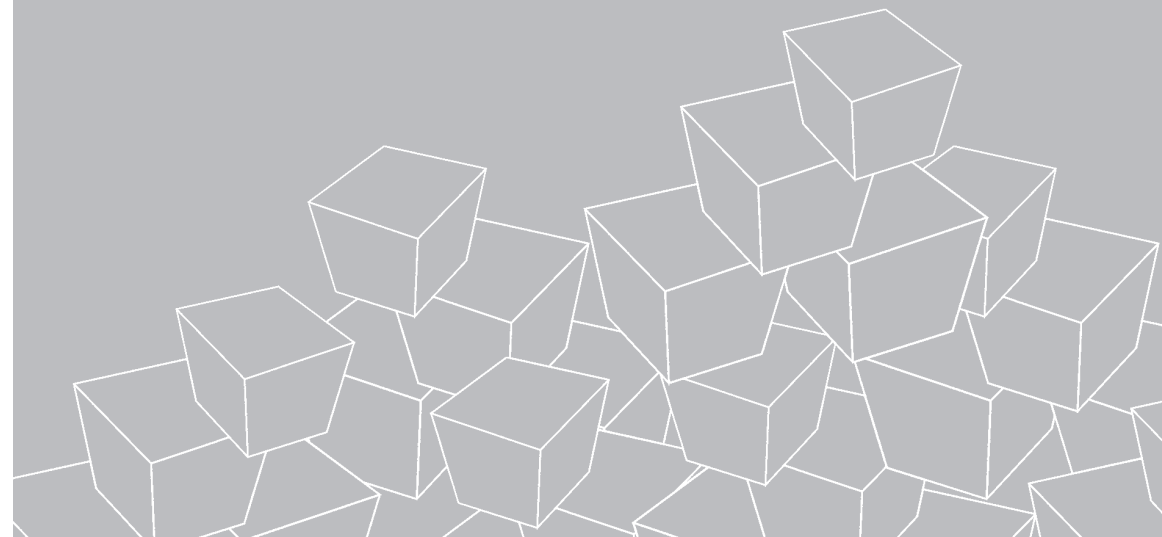
여학교 문화 속 여학생들의 섹슈얼리티 좌담회
연애 권하는 사회 속 십대의 연애
연애와 조건만남과 성폭력의 경계

성문화 읽기

지금은 '역차별(back-lash)'의 시대!?

트랜스/젠더라는 스펙터클

: 목욕탕을 찾은 여성의 젠더를 둘러싼 소란, 호들갑, 혹은 정치학



무엇이 '가장 나쁜' 성폭력일까?*

강간죄 확대와 유사강간죄 신설의 한계점

김정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형법 제정 이래로 줄곧 '부녀'로 제한되었던 강간 피해자의 범위를 남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법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은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번 법으로 바뀐 것은 비장애 성인 남성에게 대한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는가, 즉 남성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다만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더 낮은 법정형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남성의 경우는 좀 더 이전부터 강간죄 적용이 가능했었다.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강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법에서 강간이란 폭행, 협박으로(強) 타인을 간음하는(姦) 것이고, 간음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관계는 매우 좁은 개념이다. 무수히 많은 성적 접촉 중에서도 '이성 성기 간 결합'이라는 특정한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에 따라 남성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려면, 여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성에 대하여 성기 결합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 규정은 여성의 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성으로 재현하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남성 피해자를 포괄하는 강간죄의 확대는 강간죄의 보호범위를 여성의 순결과 정조로부터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한 걸음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남성 피해자의 포함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의 물리력의 차이, 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단독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남성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에 이르는 행위는 매우 드물 것이다.

여성에게 남성에 대해 성폭력 가해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속이거나 상대방의 장애를 이용하는 등 물리력의 사용이 불필요할 상황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보다도 남성에 대해 위협적인 성폭력은 다른 남성에 의한 가해 행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개정 형법상으로도 강간의 범주 밖에 있다.

남성에게 강간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은 강간 개념을 수정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였을 뿐이다. 대신 강제추행 중에서 좀 더 가별성이 높은 일부 행위를 가려내어 법정형을 상향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하였다. 바로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유사강간죄'의 신설이다.

* 이 원고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9월 뉴스레터에도 실렸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①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②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강간을 제외한 강제추행 중에서 남성 성기를 타인의 신체에 삽입하는 행위, 항문 및 여성 성기에 대한 성적 삽입 행위를 강간과 유사한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고 기타 강제추행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보다 강간죄에 좀 더 가까운 2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로써 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3단계로 세분되었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각 단계의 주된 구분 기준은 성기와 관련이 있는가, 신체 내 삽입 행위인가 여부이다. 이 같은 구분법은 우리 형법에서는 독특한 것이다. 신체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들은 피해자가 누구인가(영아, 직계존속 등),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가(중범죄, 치사, 치상 등), 어떤 환경에서 범행하였는가(야간, 2인 이상 합동 등) 등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달리 할 뿐이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특정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 다른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부위의 공격이 악의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정황이 판결에서 고려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되는 죄가 달라지거나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떤 범죄의 법정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중요성, 행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정도, 동종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측면,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각 요소들이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일반인의 가치관과 문화에 녹아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정형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보다는 범죄의 성질과 보호법익, 책임의 차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인의 가치관과 문화 등을 반영할 때에는 그 배경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성 성기 간 결합(강간), 그 외의 성적 삽입(유사강간), 성적 삽입 외의 추행(강제추행)을 비교해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상대방을 오직 성적인 존재로 비하하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자 여성 성기에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는,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하여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에 비하여 볼 때 범죄의 성질이나 책임, 보호법익의 중요성 측면에서 더 가벼운 것인가? 피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과 물건이 삽입되는 것은 보호법익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가문과 남성의 재산권으로서 여성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 다른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은 여성의 순결 상실, 혈통의 순수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물건의 삽입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와 자유라면, 두 행위 사이의 질적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유사강간과 기타 강제추행의 관계도 그 서열을 정당화하기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다. 유사강간은 강간을 기준으로 하여, 강제추행 중에서 강간과의 유사성에 따라 선별된 행위들이다. 그 결과 남성의 가해를 중심으로 하는 신체 내 성적 삽입 행위가 유사강간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별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못하는 개별 행위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타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행위는, 대상 성기가 남성 성기인 때에는 유사강간, 여성 성기인 때에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된다. '신체(구강) 내 삽입'이라는 차이만으로 두 행위 사이의 가별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정에서 시작한 낙태이야기

영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상반된 판결들?

2013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임신중절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013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낙태수술을 받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낙태수술을 한 의사 B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낙태방조로 기소된 A씨의 남편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B씨가 배우자 C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법과 같은 법조항의 구분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서열을 정하고, 가벌성과 피해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성 간 성기 결합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중대한 성범죄가 되고,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가정되며, 그에 비하여 신체 내 삽입이 없는 추행은 일단 경미한 범죄로 추정된다.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일반인의 법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기능한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에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수많은 범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법조문에 일일이 구분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와 집행에 수사 재판에서 누락 없이 확보하는 것이다. 범죄와 피해의 경중은 사례에 있는 것이지, 행위의 유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구분과 그 기준은 재고가 필요하다. 강간 개념이 가문과 가족 내 여성의 순결을 다른 남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구성되었던 것이라면, 남성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정의를 이성 성기 간 결합행위라는 제한적인 범주 속에 묶어 두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일일 것이다.

최근 내려진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두 판결이 같은 법조항에 대해 일견 상반된 입장에서 엇갈리는 결론을 내린 듯 보이면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고려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형사처벌이 결코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해당 판결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담당 의사들을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이 어떻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지 보여주며 피임부터 인공임신중절까지 재생산의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모든 책임과 처벌, 그리고 비난을 가하는 판결이었다.

법과 현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와 업무상촉탁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는 규정인가 아니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현행 낙태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규정의 입법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인구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하였고, 1970년대 들어 이를 더욱 강화하면서 불임시술 및 피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모자보건법

* 현행법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로서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윤리적 정당화 사유, 보건의학적 정당화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정당화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인공임신중절 현실을 방임하고 있는 입법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대부분 출산 후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회적 정당화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낙태죄의 적용을 받게 한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정작 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 동의의 문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동의에 관한 규정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의사는 임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의사에 대한 양형이유에 적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존재하는 기혼여성이라도 배우자의 동의라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낙태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임신의 지속 혹은 중단의 결정을 배우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이

** 사회적 정당화 사유는 임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뿐 아니라 임부의 가정 및 그 밖의 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 임신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긴 여행에 함께해주세요

젠더감수성교육 3년의 기록과 의미

토리 | 본 상담소 사무국장

성폭력 예방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성폭력 근절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 1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있다. 2013년 10월 현재 법률상의 무교육대상이 아닌 시민들도 대상별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화의 물결 속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고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폭력 예방법은 ‘밤길을 조심한다와 같은 피해 예방과, ‘성적인 농담을 자제한다와 같은 가해 예방으로 이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없는 문화를 만드는 실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화된 교육이라면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도 점검되어야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상의 성폭력예방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교육의 형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캠페인, 미디어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폭력 예방 지침 의무화 등 누구나 쉽게 일상적으로 성폭력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공공성을 갖게 된다.

며, 자기결정권을 가진 임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공임신중절, 계속되어야 하는 논의

의정부지방법원판결 사건은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자와 그 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정리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해당 사안의 피고인인 여성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남편의 음주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입장은 재판부의 관심 밖이었다. 낙태죄에 대한 담론을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으로 이해하고,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대 임부의 신체라는 대립구도로만 바라본다면 경제적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가정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논의는 찬반론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 인식의 틀을 바꿔나가야 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여성들이 성관계에서 더 많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혼인의 지위와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한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본 상담소는 종종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는다. 그럴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되물어보면 대부분의 기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아마도 그 언론사는 제도를 준수하는 정도의 매우 형식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 기자들과 현재 제도화 되어있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왜 성폭력예방이 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작은 정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화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진전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효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내용상으로도 현재 성폭력예방교육은 그저 성폭력에 대해 피해야할 상황,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만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막연히 ‘밤 1, 2시 경 길거리를 조심하세요’ 혹은 ‘남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마세요’와 같은 방법들을 근본적인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성폭력 없는 문화를 위한 실천, 즉 성폭력 발생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예방교육 내용에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이하 젠더감수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폭력을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문제로만 사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의 목표이다. 젠더감수성교육의 세부 목표는 20대 이상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성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폭력 예방을 함께 고민하기,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인 언어로 전달하여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없애고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였다.

2010~2012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커리큘럼

년도	2010	2011	2012
프로그램명	나와 아이들을 위한 공감훈련: 성폭력, 얼마나 알고계세요?	아이들의 성폭력?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키워드	성폭력과 나, 아동/십대성폭력, 미디어, 자기방어, 공감과 공동체	나, 나이와 젠더, 성폭력과 젠더, 십대의 문화, 다른 몸과 젠더(자기방어), 공동체, 성폭력과 일상	젠더, 차별/권력, 성폭력, 십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폭력운동 역사와 성폭력 사례 - 아동/십대 성폭력 대처 - 생존자의 이야기 - 젠더감수성으로 영화읽기 - 성폭력 각본과 자기방어 - 공감훈련 - 반성폭력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성차별, 성별고정관념 - 십대와 성을 주제로 대화하기 - 반성폭력 감수성 익히기 - 십대의 연애와 놀이 - 성폭력 각본과 자기방어 - 성폭력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성찰과 책임 - 생존자의 이야기 - 공동체의 역할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이 발생하는 성별화된 사회읽기 - 성폭력 발생 맥락 이해와 성폭력 각본을 깨는 자기방어 - 차별과 권력의 관점에서 살펴본 섹슈얼리티 - 십대(아동) 성폭력 예방 답론 다시 읽기와 십대 성문화 - 성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성

많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홀로 떠맡은 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다보니, 성폭력피해는 예외적인 일로써만 취급되며,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만 잠깐 동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발생 맥락과 공동체의 책임을 더욱 더 비가시화시킴으로써 성폭력피해생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침묵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데 반하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충분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한 자기 관점을 점검해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확산되어있지만 활발한 논의

의 장이 없는 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성폭력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평소 갖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는 젠더감수성교육은 '성폭력예방'의 목적 이상으로 반성폭력 시민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젠더감수성교육은 우리가 젠더화된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교육이 가능해야 반성폭력담론에 대한 공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젠더감수성이 풍부한 사회에서 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음을 알려냈다. 3년간 젠더감수성교육을 실행하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의 새로운 반향으로 젠더감수성교육의 제도화도 예상해보았다. 젠더감수성교육이 갖는 의미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의 형식과 내용들을 전면 점검할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현재 젠더감수성교육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완성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은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침서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실행자 또는 참여자로서 젠더감수성을 확산시켜나갈 사람들, 어렵지만 보람 있는 긴 레이스를 함께 달려볼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십대의 섹슈얼리티

우리 사회가 십대에게 요구하는 성적 규범은 매우 단조롭다. 십대를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존재로 규정하고 십대에게 섹슈얼리티의 표현이나 실천을 억제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십대를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번호 프리즘에서는 십대, 주로 십대 여성들의 성적 실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학교를 다닌 활동가들의 좌담회는 우리에게 엄격한 이성애규범에서 살짝 비껴나있는 여학교 내 여학생들의 다양한 성적 실천들을 통해 연애 또는 섹스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다 넓은 섹슈얼리티 기억을 되살리고, 이목소회의 글은 연애에 대한 십대들의 가치체계와 실천방식을 바탕으로 현재 십대에게 연애가 얼마나 규범적이고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김민영은 조건만남, 즉 보통 성매매로 규정되는 공간에서 모든 행위를 손쉽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으로 규정할 때 삭제되는 십대 행위자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고민을 나눈다.

여학교 문화 속 여학생들의 섹슈얼리티 좌담회

참가 : 윤, 겨울, 달로, 잇을, 희아
서기 : 영
녹취 : 김언진
사회 정리 : 배

배 여학교 문화는 우에노 치즈코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언급한 적 있지요. 여중, 여고처럼 여학생들만의 공간에서 가부장제와 어느 정도 동떨어진 게토 같은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여학교 문화에 대한 좌담회를 통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보고 여학교 문화 안에서 수행되었던 섹슈얼리티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달로 저는 중학교는 공학이었지만 반이 성별이 나뉘어져 있었고 여고를 졸업했어요.

겨울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어요.

잇을 저도 같아요.

희아 저는 여중을 다니고 공학교등학교와 여고를 나왔어요.

윤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어요.

영 저는 성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는 중학교를 1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어요.

여학교 속 놀이

겨울 우리 학교에서 재미있던 건 배구부가 유명했거든요, 전국대회에서 일등하고 이런 데였어요. 배구는 밖에서 훈련을 안 하잖아요. 얼굴 하얗지, 팔다리는 길고 조그만 머리에 커트를 하고 정말 사슴 같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예쁜 사람들이었어요. 애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꽃이랑 들고 여상 체육관에 갔어요. 가서 “언니들!” 이러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어떤 언니가 뭘 했다, 누구한테 인사를 해줬다던지 연예인처럼 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애들한테는 진짜 큰 즐거움이었던 거 같아요.

달로 제가 기억나는 건 중학교 때가 속옷을 벗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희아 남의 속옷을요?

달로 브래지어 뭐 입었나 보려고 친구들 속옷을 벗기는거예요. 장난으로. 붙잡고 브래지어를 끌어서 벗겨요. 그런데 하지마, 이러면서 막 웃어요. (웃음)

윤 싫어하면서 웃은 게 아니에요?

달로 놀이였어요. 많이 당하는 애가 있었는데 개는 뭐라 그래야지? 엄마가 화려한 레이스 속옷 이런 걸 사주는 애였던거예요. 애들이 그걸 알고 빼보고, 던지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그러곤 했어요.

겨울 저희는 체육시간에 런닝을 안 입고 브래지어만 하고 체육복 입으면 애들이 막 까진 애라고 놀리고 그랬던 게 기억나요. (웃음)

희아 저희는 가슴 만지는 게 있었어요. 가슴을 서로 이렇게 톡. (웃음) 그니까 가슴이 얼마나 크지. 어, 애 진짜 가슴 크다고 그랬어요.

달로 큰 애들을 많이 만지는 건가요? 약간 육감적인 애들이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겨울 아니 저흰 그런거 없이 약간 개구쟁이인 애가 있었는데 가슴이 컸어

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거예요. 야 봐봐 이려고.

달로 우리는 애가 너무 말랐는데 가슴이 크잖아요? 그럼 뽕브라다 이러면서
 꺾러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만지면 툭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웃음)

노출을 대하는 태도

잇을 저는 중학교 때 애긴데, 맞은편에 남중이 있었어요. 운동장이 가운데
 있긴 하지만 보려고 하면 서로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여자애들 몇몇이 창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옷을 벗는거예요.

영 자진해서요?

잇을 네. 다 벗고 이러진 않지만 치마를 이렇게 올렸다가

일동 아~

잇을 일부러 보란 듯이 창문 앞에서 시선 끌고, 시작한다고 예고하고 그랬
 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발 하지 말라고 남중에서 전갈이 와요.

겨울 저는 남자 성기를 처음 본 게, 학교 앞에 인적이 없는 논이 있었는데
 웬 남자 하나가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며 쇼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여학교에 여고생들이 다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걸 보면
 서 호응을 했어요. 욕도 막 하고, 그럼 개는 또 좋다고 더 신나서 하고
 그랬어요.

잇을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한 1학년이 바바리맨을
 본거예요. 반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어느 날 학교를 하다가 그
 바바리맨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본거예요. “어! 재대!”하는 순간, 한 반
 에 한 열 명 정도인데, 그 열 명이 다 전속력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
 가서 때리고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중하고 혼을 낸 다음에
 경찰을 부른 사건이 있었어요.

희야 멋있다.

잇을 학교가 작아서 소식이 빠르게 다 알려졌거든요. 다들 1학년 너무 멋
 있다 이러면서 갈채를 보냈어요.

겨울 저는 아까 그 논에서 알몸으로 춤추던 그 사람. 이게 과연 여학생들
 한테 그냥 성희롱이었을까를 잘 모르겠는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분명 성희롱이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인 남성의 벗은 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웃음) 몇 백 명의 애들이 삼사층 되는 건물에
 쫄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엄청난 거잖아
 요. 저만해도 어떻게 이럴수가 아니라 같이 가서 욕하고 유심히 보
 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폭력 행위자와의 의도
 와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서 웃겨요.

배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외부인이 될
 해도 우리가 좀 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거요.

호감을 둘러싼 논의들

달로 다들 연애 사건은 없었나요?

희야 연애 사건은 아닌데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손잡고 그런
 여자 친구가 아니라 사귀는 여자친구요. 두 커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 우리는 둘이 친한데 우리랑 친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만 인식을 했
 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모든 여중여고에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거든
 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닌 고
 등학교는 이성애 중심이 엄청 강한 학교여서 거의 숨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같은 재단 남고가 있고, 소개팅을 하면 꼭 그쪽이랑 짝으
 로 하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달로 계급적인 기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 지역이잖아요.

겨울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인 긴장감 같은 게 있었던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네 여자애들끼리 요즘 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냐고, 그런거 하지 말라고 아침 조례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달로 저희는 레인보우 뱃지를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손잡고 다니지 마라, 너 왜 무릎에 다른 친구 앉히냐, 그런 학교 검열도 있었어요. 한 친구는 털도 좀 많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그랬는데 머리에 뽀뽀아라, 길러라 이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거예요. 딱 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애였는데 선도부 선배 언니랑 연애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진짜 무서운 언니로 유명했는데 둘이서 백화점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언니가 애교를 부리더라 (웃음) 이런 소문들이 디테일하게 났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반 반장이 제게 쿠키를 받을 쪼개 주면서 멋있는 제스처를 취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가서, “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멋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너 개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본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 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 기억이 있어요.

희아 저는 복잡한 게 배구선수같이 키 크고, 하얗고 미소년 같은 애가 있었고 전 애를 좋아했어요. 보면 설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그랬던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느낌 있잖아요. 정말 제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제가 전학을 갔는데 그때 병에 한 가득 거북이를 접어 줬어요.

잇을 좋아함의 상징이네요.

희아 고민을 했던 게 저는 그 배구선수 같은 애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제 성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왜 나를 좋아하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거예요. 제가 애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애가 나를 좋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했어요.

겨울 저도 생각해보면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둘이 너무 친하고 맨날 둘이 어디 가요. 셋이 같이 친한데 왜 둘이 그랬는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기가 연인관계일수도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내가 눈치도 없이 무슨 짓을 한건가, 그 사이에 끼려고. (웃음) 그런데 한 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맞아, 개네도 그랬네? 개네도 그랬네? 이러면서 쪽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았구나, 그런 생각.

희아 저는 여중, 여고라서 멋있는 언니에게 공식적으로 선물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녀공학에서는 멋있는 언니가 있는데 선물 공세는 안 해요. 멋진 오빠에게 하는 게 공식적인거죠.

배 진짜 여중, 여고에서는 애정을 표현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섹슈얼리티가 관여된 게 아닌 듯 보이기도 하고 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남녀공학일 때는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드러나면 추궁을 당하고요.

달로 동성 간의 애정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성애 문화가 닿는 곳으로 가면 그게 부자연스러워지고 내가 호감이 있다는 걸 별로 개발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잇을 맞아요. 표현하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희아 여중여고에서는 이 언니 예쁜 것 같아, 누구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렇다는 걸 얘기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잇을 강력한 이성애 문화 속으로 들어갔을 땐 ‘모호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달로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언니들, 여자들한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애정과 호감을 다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친근함일 수도 있고, 설레는 감정도 있고

연애 권하는 사회 속 십대의 연애

이목소희 | 아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사업팀장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별로 여자 들하고 깊이 얘기를 하거나 서로 친밀하게 지낼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 그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달로 뭐지? 탐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내 스스로 탐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는 연애를 해야 하니까 빨리 남자 찾아! 이런 게 있었어요.

잇을 그냥 이성애자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거예요.

희야 맞아. 연애를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잇을 같은 경험이어도 어떻게 의미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자들 간의 친밀한 표현이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이성애 문화가 강력한 곳으로 가게 됐을 때, 더는 그 전과 같은 무게가 아닌 거죠. 크게 감수해야만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표면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 좌담회는 이후로도 여학생간의 우정경쟁을 공식화 했던 마니또 제도, 연합동아리가 가진 권력, 성경험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폐쇄적이고 잔인한 공동체 문화, 적극적인 아이 돌 팬덤에 관한 얘기까지 끝없이 진행되었다. 여학교 안에서 십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섹슈얼리티의 특수성은 가부장제 규범이 공학에서만 굳건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여학교 안에서는 규정되지 않는 섹슈얼리티 수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가부장제 규율에 대한 내부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껏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던 여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나서면서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여학교에서의 경험은 적극적으로 잊히고 쉽게 추억으로 사라진다. 좌담회가 현재의 십대와 나이 차이가 나는 참가자들로 진행되어 제한된 경험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보통 연애, 또는 섹스만으로 규정되는 섹슈얼리티가 아닌 이어져있는 맥락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던 자리였다. 십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화와 분석을 시도한 것이 이번 좌담회의 의미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성교육 주제 일 순위는 ‘연애’다. 아해! 센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연애’에 대해 알길 원한다. “모쏨(모태솔로)”, “쏨탈(솔로탈출)”, “커플천국 솔로지옥”, “커플위너 솔로루저” 같은 용어들은 이미 청소년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연애질”과 “애정행각”으로 인한 괴로움을 하소연한다. 부모는 자녀가 “이성교제”에 빠져 성적이라도 떨어질까, 연애 문제로 사춘기 홍역을 앓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다수의 어른들은 청소년의 연애가 불편하고 두렵고, 청소년은 연애를 욕망한다. 예전에 중학생들이 “지금 나이에 남친 혹은 여친 있는 게 나쁜 거예요?”라고 물었다면,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연애해도 되나요?”, “어떻게 사귀나요?”라고 묻고 있다.

연애는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같은 시공간을 경험하며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였다. 그러나 도시화된 현재는 공동체의 인정보다 짧은 시간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체성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보여줘야 하는데 외모꾸미기와 소비의 취향이 바로 그 지표가 된다. 연애 실천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충족시켜준다.

연애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한 존재와의 관계 맺기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일한 '나'란 존재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외모, 성격, 경제적 능력 같은 매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연애하고 있는 '나'는 그 유일무이한 존재를(에게) 선택한(받은) 것이다. 반면 모태솔로는 "찌질함"의 증명이며, 20대 중반이 지나도 성관계 경험이 없는 남자는 "마법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모쏠 유형 분석"과 "솔탈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 연애와 관련한 담론들도 달라지고 있다. 연애 과정은 점차 촘촘한 기획으로 구성되고 표현하는 용어들은 구체화되고 있다. 호감이 가는 상태,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썸남", "썸녀", "어장관리", "썸탄다"와 같은 용어들로 대체되었다.

사회문화의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경향에 빠르게 반응한다. 연애를 통해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경험하고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반면 연애를 하면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하며 끊임없이 감정노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 표는 프로그램 중 중학생들이 정리한 연애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다.

연애의 좋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일 챙기기 : 둘만의 특별한 날(의미 있는 날)이 생김! -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나 속에 있는 말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 - 나의 존재 변화 :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생기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해주는 생각의 변화가 생긴다. -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외적으로 예뻐짐 - 외롭지 않다. - 꿀리지 않는다. - 연애경험이 쌓인다. - 정신적으로 성숙해짐 :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 배우게 됨 -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을 경험함 - 챙겨줄 때 (ex. 아플 때) : 사랑받고 있음을 느낌 - 선물줄 때 (ex. 이벤트) : 나에게 투자한다는 점이 좋다.
-------------	---

연애의 안 좋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부담감 : 선물이나 이벤트 비용 및 데이트, 만남 등. - 공부에 집중 안됨 : 문자와 사소한 만남의 시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 심리적 부담감 : 연애 후 헤어지면 서로에 대해 어색해지고, 연애할 때는 헤어짐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 개인적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ex. 학업) - 갈등이 생김 :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 - 더 좋고 많은 것을 줘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음 - 질투 (이해해주는 마음이 없음) - 자유를 뺏김 - 사랑과 우정 모두 챙기기 힘들다. - 주위의 시기를 받는다.
---------------	--

이성간 연애의 경우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외모와 성격으로 대표되는데 경제활동이 제한된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또래들 사이에서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연애에 더 민감하다. 왜냐하면 여자청소년의 연애는 여자다움이 승인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자청소년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에 연애를 통한 남자다움에 대한 인정의 압박은 적다.

그리고 연애에 등급이 존재한다. 우선 연애한다는 사실 자체로 능력 있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누구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가가 연애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성교육 중 또래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연애를 한다고 드러내면, 놀라면서 "너 그거지?"라고 묻는다. "그거"는 직접 만나지 않는 사이버 연애를 의미한다. "예쁜 연애"를 하고 있음은 끊임없이 카톡 프로필과 카스(카카오토티스토리)를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성간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젠더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썸 타는" 순간부터 고백하고 데이트하고 이별하는 순간까지. 그러니 연애 과정에서 고민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자청소년은 스킨십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규범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스스로 성행동에 대한 욕구가 없는 존재로 정체화해 온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상대방의 스킨십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스킨십을 요구해오는 상대를 둔 여자청소년은 명확하게 거절하면 상대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까봐 고민이다. 자신의 욕구를 아는 여자청소년은 스스로가 “짜 보이는 애”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은 상대가 주도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데이트비용이다. 시각적 이미지로 저장된 연애의 단상은 소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데, 데이트비용을 주로 담당하는 남자청소년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때 3만원을 주고 커플링을 사서 고백, 데이트비용 없으면 약속을 잡지 않기, 좋아하는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고가의 이벤트와 선물은 성교육 중 만난 남자청소년들의 사례다. 외모가 출중한 극소수의 남자청소년은 여자들이 다 돈을 내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남자청소년들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여자청소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데이트 비용 부담은 7:3 혹은 6:4다.

그러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연애과정에서 젠더규범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실천을 하는 청소년도 있다. 성교육 중 만난 여자청소년 중 몇 명은 더치페이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첫 연애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연애경험에서 더치페이가 훨씬 편하고 좋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의 권력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지고 있다.

연애는 각자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 하다. 연애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확연히 경험할 수 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매 순간 상대방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연애만큼 좋은 훈련이 있을까. 연애는 좋은 혹은 안 좋은 것으로 가치를 매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라고 뭐 엄청 다르겠는가. 더 이상 어른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 짓기는 이제 그만!!

연애와 조건만남과 성폭력의 경계

김민영 | 사이버포래상담실 사무국장

「김모(25)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11년 3월 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여자 청소년 2명을 배달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여자 청소년들을 배달 장소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맡았으며, 배달종업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6.30 <뉴스1> '여자친구까지 성매매시킨 다방 업주 실형' 기사 중 일부 발췌)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되는 많은 사연들이 그러하듯,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사이버포래상담실 또한 연애와 성폭력, 성매매 피해와 알선의 고리들이 다층으로 맞물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사실, '사건과 사고'라고 명명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모두가 충동 혹은 우연, 의도적인 계획 사이를 모호하게 넘나들거나 교란시키며 무한재생 중인 우리네 일상이고 관념의 재현인 까닭이다.

연애-성매매-성폭력라는 어느 하나 단언하기 쉽지 않은 주제가 '십대여성'이라는 분열적^{*}인 집합코드를 만났을 때 보여지는 양상을 표현하기란 현장 활동가일 뿐인 나로서는 막막하다. 이에 그동안 청소년성매매 현장에서 만난 위기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기술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사이버포래상담실은 성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나 앱에 직접 들어가 상담 의사(意思)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 말을 붙이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한다.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일방적인 우리쪽 바람이고, 우리와 마주치는 이들은 그야말로 거추장스러운 찌라시 정도로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 공간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관계'를 위한 말들이 넘쳐나는데, 그 양태는 대충 이런 모양새를 띤다. '훈남오빠 있다. 안양 안산 수원 서울여자 놀자', '오빠 혼자 산다. 통통한 애 좋아해', '14~16세만. 상황극 하고 놀까요?', '인천. 지금 놀 수 있는 여자만', '서울21세 남. 스킨쉽 좋아하는 여자친구 구해' 라거나 '재워주실분 구해요', '서울대입구역. 매너남만', '시흥시 **동. 지금부터 10시까지'와 같은 채팅방 제목들은 구태여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도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던 수많은 전례들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번개'라는 무책임한 이름으로 별 죄책감 없이 현재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호채팅을 거쳐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진 경우** 그야말로 연애와 성매매, 성폭력 등의 모든 경우의 수가 실제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뒤틀리고 혼재된 양상이어서, 당사자조차도 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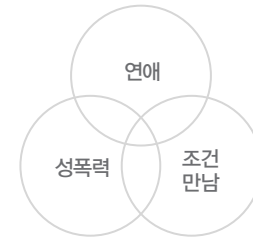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십대'는 '완벽한 무성(無性)적 존재'임과 동시에, '나이가 어린'의 동의어로 간주된다. 이 말이 다시 가부장제에 진득하게 눌러 붙은 '여성'이라는 말과 결합되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그저 점잖고 고상한 표현으로 '분열'이라 칭한 것이라 해 두자.

** 성윤숙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의 57%가 사이버 채팅 이후 4시간 이내, 심지어 그 중 12%는 1시간 이내에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2010,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현실과 대안 모색)

진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석’이란 것은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는 자기 지평에서 출발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그것이 본인의 피해를 인지하는 사안이라면, 성별·나이·자본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권력과 젠더에 대한 민감성을 곁들여 현재의 맥락을 재구성하여야도 출 가능한 느낌일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자신의 성격형을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적 가르침이 전무하다해도 틀리지 않을 우리 십대들에게는 어렵도 없을 터이다. 그리하여 현재 많은 십대여성들은 명시되지 않은 만남을 토대로 한 연애와 성매매와 성폭력의 어디쯤에 솔하게 자리하고 있다. 자신조차 진행 중인 관계나 경험을 정확히 무엇이라 규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가슴 아프게도 많은 경우 그저 ‘연인’이었다며 ‘몹쓸 자발(!)’의 근거를 맥없이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그쯤에서 그들을 만난다.

다시, 위에서 인용한 기사를 되짚어 보자. 서로를 ‘연인’으로 승인하는데 정해진 과정이나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인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키고 그 수입을 갈취하기까지는 상당한 권력체계가 작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로와 이유, 서로를 연인으로 명명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결국 여친이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거나 혹은 방조하는 단계, 비슷한 처지의 또래십대들과 묶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입까지 갈취하는 그 장면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있어야 할 그와 그녀의 협상력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고백하자면,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그녀들의 입에서 ‘남친’의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그들 관계의 순수성과 평등함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아주 의례적인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그녀들의 해석에 맡기는 것으로 매듭짓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믿고 마음을 줄듯 한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녀가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어깃장을 놓나 싶어서, 나 또한 상담원이 가진

권력으로 그녀의 인생을 자의적으로 해석할까봐 등 그럴듯한 변명을 몇 개 더 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고달픈 그녀들에게, 너네만큼은 연애마저도 ‘그저 순수하게 하라’며 종용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놓고 볼 때, 가운데 교집합에는 ‘상대방이 있다’, ‘권력관계가 있다’, ‘성적행위가 있다’ 등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각각의 차집합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 부분이 연애-조건만남-성폭력을 비로소 구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 흐릿하거나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해 피해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십대들을 일깨울 것이 분명한데도, 나는 그닥 무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특히 ‘연애의 차집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떠오르는 단어마다 번번이 고개를 젓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이 그저 당혹스럽다.***

아무래도 이 숙제는 앞으로도 한참동안 끝내기 힘들 것 같은 예감이다. 우리가 만나는 십대들에게 당위적인 윤리나 끈대의 훈계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가 흔쾌히 동의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구성할 연애의 차집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그녀들과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즐거움과 긴장, 협상과 승인의 과정에 대해 피차 질편한 방식으로 꾸준히 드러내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진심’이나 ‘로맨스’ 같은 단어가 떠올랐다면, 픽업 아티스트라는 수상한 직업을 가진 이가 떠나 공전의 히트를 친 ‘미친 연애: 연애를 잘하려면 진심을 버려라’를 참고하시길.

지금은 '역차별(back-lash)'의 시대!?

김보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내가 2년 동안 근무했던 대학은 남학생의 비율이 75%에 이르렀는데, 몇몇 과목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휴강이 될 정도니 학교 전체가 공대적, 남성적 분위기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 여학생들은 '명예남성화'되거나 여성성을 한껏 강조한 '공주과'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았다. 남학생의 수가 절대 다수이고(물론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 자체도 남성적 문화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점은 너무 많은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적은 과는 여성들을 공주로 모셔야 한다면서 역차별이라고 하고, 여성이 많은 과는 여성들 위주로 돌아간다면 역차별이라고 한다. 얼마 전 여성관련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한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너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지기 위해서 여학생회 활동을 한다고 했다. 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여자 휴게실이 있으니 남자 휴게실도 만들어서 평등한 대학을 만들겠다

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차별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강해지는 요즘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학생들은 갈수록 비주체화되는데, 주변에 남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 때, 컴퓨터를 고쳐야할 때 등등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커플의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의 가방과 책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의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오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레포트를 써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만 본다면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학생의 권리가 높아서 남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은 결코 아닌 듯하다. 겉으로는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교양과목 하나 원하는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인 친구를 만나더라도 남자친구와 동행하거나 허락 하에 만나는, 이른바 통제와 감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평소에 잘해주니까, 이런 거는 내가 양보해야지.'라는 정당화로 협상되고 있다. 내가 강의하는 교양과목은 본인의 성에 관한 경험, 생각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랬다면서 한참을 고민하던 여학생도 떠오른다. 공적 담론에서는 여학생회 휴게실 같은 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차별로 받아들이는 남학생들이, 역설적이게도 본인의 사적 관계에서는 스스로 차별적 위치를 만들어내면

* 나와 함께 일하던 인턴 여학생에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써야하는 일을 종종 부탁했는데(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중에 그 학생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내가 할 수 없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면서 굉장한 쾌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 경우를 보면, 역할 경계를 벗어나는 일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단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자존감을 향상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 강좌에 남학생이 많으면 남자친구가 듣지 못하게 한다고도 하고, 교수나 강사나 젊은 남성이면 듣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서 지나친 배려를 넘치도록 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대학에서 수적,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차별로 인식되고, 여남평등이란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잘해주는 것으로 이미지화되어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갈수록 주체성이 상실되는 반면, 본인의 욕구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 주체성과 욕망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한다. '사적 영역', 연애 관계에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남자친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선택권은 본인이 가짐으로써 젠더 간에 넘침과 결핍이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했다. 그건 차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호이자 권력이라고. 그러니 여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좀 놓아주라고 말이다. 여학생들에게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도 조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지금의 대학에서는 억압하는 자 없는 피억압자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얼마 전에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문제라며 한 여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여학생이 많은 한 단대에서 남자 신입생이 들어오면 고학번 여자 선배가 한 명씩 째하고, 술자리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적 행위(다양한 수위의)를 한다고 한다. 성별, 젠더를 넘어 다수자의 성별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만약 남자 선배가 신입생 여자 선배를 데리고 나가 성적행위를 한다면 엄청난 성폭력 사건으로 의미화 되겠지만, 성별이 바뀌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자 신입생을 데려가는 고학번 여자선배가 대부분 예쁘고 좀 노는 언니들

(?)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과 여학생의 증언이다. 이 이야기를 같이 들은 한 남학생은 만약 못생긴(?) 여자 선배가 데리고 갔다면 바로 성폭력으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마냥 이야기하기도 했다. 같이 따라 간 남학생이 얼마만큼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성적 주체성은 합의된 관계에서 나의 권리와 의견을 말하고, 상호 합의해가는 과정이지, 또래집단과, 학번, 미모 권력을 배경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즘 세상 많이 변했다. 여자들도 전과 다르다'고들 이야기할 때, 전과 달라진 것은 또 다른 권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고 단지 성별만 바뀐 모순적 상황이 아닐까 우려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한 학생들도 많아졌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주변 학생들도 소통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모임을 꾸려나가기도 한다. 문제는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베충', 혹은 남성연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과거보다 훨씬 깨어있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군대를 가야하거나 막 다녀온 학생들의 경우, 보수화된 군사주의적 가치관이 오염 없이 생생하게 주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반면, 군사주의적 문화에 혀를 차며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만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양극단에서 있는 학생들에게 막대 구부리기란 존재할까. 경계를 좁히는 일이야말로 가장 급선무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트랜스/젠더라는 스펙터클 :

목욕탕을 찾은 여성의 젠더를 둘러싼 소란, 호들갑, 혹은 정치학

루인 |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연구활동가

2013년 8월의 무더운 어느날 여자목욕탕에 들어간 한 여성의 기사로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사건 내용은 간단했다. 한 여성이 아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언니를 찾아 여자목욕탕에 들어갔다.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성을 보고 당황했고 경찰을 불렀다. 비록 돈을 내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해도, 목욕탕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은 경범죄로 가볍게 조치하고 마무리지었다. 내용만으론 별 것 아니다. 여성이 지인을 찾아 여자목욕탕에 돈을 내지 않고 잠깐 들어갔음이 사건의 유일한 내용이다.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사건으로 구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나 얘기하고 말 일에 불과하다. 기사에 실린다고 해도, 종이신문의 지면 한 구석 “휴지통” 섹션에서나 다루고 넘어갈 법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매일 같이 스펙터클한 사건으로 시끄러운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유는 하나다. 사건의 주인공이 mtf(male-to-female)/트랜스여성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주인공이 트랜스여성이거나 다른 트랜스젠더면 늘 포털사이트의 메인 뉴스로 선정되느냐면 그렇지 않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많은 사건이 사건으로 구성되지 않고 포털사이트 메인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일은 보도 자체가 안 된다. 분명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는 사건이나 중요한 인권운동 역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건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 수 있는 이슈가 포털사이트에서 호들갑스럽게 회자될 뿐이다. 즉 (트랜스)여성인 돈을 내지 않고 목욕탕에 지인을 찾으러 간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정도의 사건일 리 없다. 이 사건의 유일한 스펙터클, 볼거리인 사건의 주인공이 트랜스여성이란 점 뿐이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라간 기사는 이 일의 스펙터클을 정확하게 짚는 기사, “몸은 여성, 법적으로 남성.. 여탕출입 처벌받을까”다. 그리고 이 일이 소란스런 사건으로 구성되는 그 찰나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된다.

사건으로 구성된 이 일에서 많은 쟁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 두 가지만 짚자. 첫째, 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둘째, 무엇이 사건의 (트랜스)여성을 트랜스젠더로 인지토록 했는가?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트랜스여성의 외부성기 형태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뒤 확인했고 그래서 여성임을 확증했다고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우선,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확증할 권한을 갖는 건 누구인가? 적어도 이 사건에서(그리고 많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일상에서) 젠더 범주는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 인식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외부성기형태를 통해서, 규범적 수준의 외모 구현을 통해서 오직 타인에 의해 공인될 뿐이다. 정체성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라면 젠더 정체성 역시 자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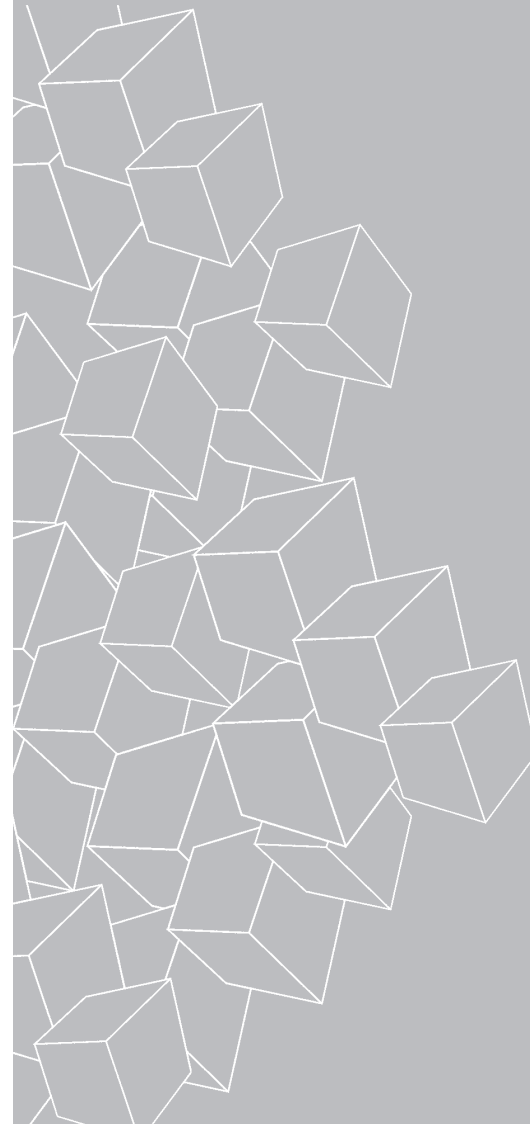
인식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젠더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듯, 외부성기형태로 타고난다/결정된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그건 여성형 외부성기를 지녔거나 음경이 없어서며,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건 음경이 있어서다. 음경 여부가 당신의 젠더를 결정한다. 경찰 조사 과정은 바로 이런 사회적 인식을 확인해준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이 위협하고 문제인 또 다른 이유이자 두 번째 질문은 '사건의 주인공이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은 mtf/트랜스여성이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다. 호르몬을 상당 기간 투여했건 얼마 안 되었건 상관없이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안 한 mtf/트랜스여성이거나,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지 않는 mtf/트랜스여성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트랜스여성은 어떤 모욕을 겪을까? 짐작하건데 이번처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대충 얼버무리며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은 이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부르며 mtf/트랜스여성의 젠더 범주를 무시할 것이고, 소위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을 때 적용하는 건 조물침입죄를 적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인터넷의 호들갑("음경이 없으니 당연히 여자목욕탕에 가야지"가 베스트 댓글이다)은 무난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위협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소란은 트랜스젠더라면 당연히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이해/인식 수준이 공공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진성 트랜스젠더' 혹은 자신이 인식하는 젠더로 사회에 통용되지 못 할 것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의료적 조치라는 측면만 봐도,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고 호적 상 성별 변경을 선택하는 트랜스젠더는 일부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투여만 선택하고 어떤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형태를 변경하길 바라고 어떤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통한 변형 대신 몸에 새겨진 의미를 바꾸길 바란다. 그래서 사회에서 음경이라 부르는 것을 (트랜스)클리토리스로 혹은 그저 살

덩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클리토리스라고 부르는 것을 작은 음경이라 재명명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개개인은 이 사회의 지배 규범적 인식과 협상하며 다양한 형태의 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소란은 트랜스젠더의 복잡한 양상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몸을 상상하는 다양한 방식을 특정 규범에 수렴할 뿐이다.

또 다른 쟁점은 목욕탕에서 발생한다. 사건의 트랜스여성이 호적 상 성별변경을 신청했다는 건 호르몬 투여 등 의료적 조치를 상당 기간 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소위 비트랜스여성으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긴 머리카락에 치마를 입은 사람,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며 목소리는 걸걸하다는(이런 수식어를 들으면 슬프다) 사람을 여성이 아니라 여장한 남자로 인식했다. 이런 반응은 트랜스여성이 사회적으로 안전한/적법한 존재, 소위 여성 젠더 범주로 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목욕탕에서의 반응은, 소위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외모의 범위가 얼마나 협소한지도 알려준다. 여성이라면 덩치가 작아야 하고 목소리가 얇아야 하며 외모를 곱게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어떤 순간에 봐도 여성으로 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여성 젠더 규범을 체화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신이 태어날 때 여자로 지정받았다고 해도 여성으로 통하기 어렵다. 때때로 남자로 통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여성전용 공간인 여자목욕탕, 여자화장실 등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부치 젠더건 다른 어떤 젠더건 상관없이, 소위 남성적 스타일을 선호하거나 남성적 실천과 동일시하는 많은 비트랜스여성이 남성으로 오인되면서 화장실 사용 등에 불편을 겪는다. 즉 사건의 트랜스여성이 목욕탕 입구에서 겪은 일은 단지 트랜스젠더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트랜스여성이건 비트랜스여성이건 상관없이 여성 젠더 범주에 속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여성 젠더 범주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속하는 범주가 아니라 수많은 노력을 통해 체화해야 하는 범주다.

한 여성이 여자목욕탕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생한 이 사건은 그 주인공이 mtf/트랜스여성이어서 사건으로 구성되긴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성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건이기도 하다. 여성은 적법한 외모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여성형 외부성기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밑절미다. 이것은 트랜스여성 혹은 트랜스젠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이 단지 트랜스젠더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트랜스젠더건 비트랜스젠더건 상관없이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건임을 뜻한다. 외부성기형태와 젠더가 일치해야 한다는 상상력, 특정 젠더는 특정 규범에 부합하는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은 사건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치학이다.



3

생존자 말하기
책 한 권을 털었을 뿐,
: 삶의 마무리가 아닌 첫걸음

사례연구
약물과 성폭력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투 마더스 - 불안정하지만 아름다운 균형

책 한 권을 털었을 뿐, 삶의 마무리가 아닌 첫걸음

숨

3년 전, 내가 함께한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시청각적 전시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불러들이고 해석해보고 다시 말하기 하는 자리였다. 그 간 친구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나도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와서 기뻐고 망설임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하기대회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다른 고민들이 점점 정체를 드러냈다.

“이 전시가 끝나면, 작품 만든다고 끄집어내 놓고 돌보지 못한 내 작은 아이들을 다독여야겠고, 자세한 이야기 없이 툭 불러다 얹혀 놓은 엄마랑 밥도 먹어야겠습니다.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성폭력 경험과는 별개로 사람이며 그림이며를 대하는 제 바닥 또한 보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일, 잘 못하는 일, 잘 하고 싶은 일, 미루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 그것들을 대하는 나를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활동 속에서 지지 받았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도 받으려고 합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통 지지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부터 인간에 대한 배신을 경험하고,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꽃뱀’ 취급을 받기도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겪게 되는 불운쯤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도 물론이지만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런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기는 쉽다.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지만 그럴만한 배경이 없다면, 이렇듯 사회의 병리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쉽다.

이런 사회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을 요구받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세상을 공격하면 피해망상이라고 일축된다. 그러다보면 잔인한 경험으로부터 생존한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더럽혀진 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 있는 자에 대해 관계중독을 보이기도 한다. 끊임없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을 가정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적 혼란은 필연성을 가지게 된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지지하는 집단과 경험을 이야기 하고 풀어내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옹아매던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는 생존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나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또다른 중요한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오랜 작업의 시간을 선물 받았다.

처음 나의 성폭력생존자 정체성을 긍정하며 찾아간 곳은 ‘작은 말하기’였다.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힘을 주고 안전함을 느끼던 어느 날, 같은 말하기 참여자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그분은 성폭력

을 경험한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자리에 참여했었다. 처음에는 성폭력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저 감수성 없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내가 가족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공허감,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대한 몸서리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를 들여다보니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고구마 뿌리처럼 팔려 올라왔다. ‘큰말하기’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감정보다도, 가족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길 바라는 감정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곤 했고, 그렇게 가족들을 불러 앉힌 자리에서 해묵은 숙제를 시작한 것 같다.

그동안 여성주의는 많은 걸 해결해 주었다. 나의 경험 속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했고,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 이제 말이라도 해볼 힘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나를 들여다 볼 여유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왜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어렵기만 한 걸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건 언제까지 하면 사라지는 것일까. 관점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사실 모든 게 가설이고 경험칙일 뿐이라 누구도 어떤 정답도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싶었다.

말하기대회를 마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가장 나중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작업했던 이야기는 결국 가족과 어린 시절이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물고 온 수많은 일들에 대해, 너무 찌질했던 한 남자가 가부장이라는 권력을 폭력적으로 휘둘렀다는 정리는 사실 너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늘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 년 정도의 몰입 이후 잃어버린 퍼즐 몇 조각을 찾은 기분이 든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이 그림 전체의 방향을 바꿔 놓는 키워드란 사실

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는지 너무 이해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로 들릴까봐 걱정도 살짝 있지만, 이 이해는 단순히 분노를 누르고 인간애로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의미를 가진다.

몇 십 년을 아빠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증오로 가득찬 지난 시간 동안 나 역시 증오 속에 엉겨붙어 있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아빠를 불러다 앉히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내가 여전히 아빠에게 겁먹은 어린 아이가 아니란 걸 서로가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린 시간이 있었지만 혼자 하는 망상과 억측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가족이라는 세계에 대한 내 나름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술하게 해오던 추측과 과도한 이해심들과 억눌렀던 분노, 숨기고 살아왔던 분열이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더 잘 보이고 그런 스스로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를 알고 생긴 버릇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을 들을까봐 아무것도 못할 때라든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할 때에도 괴로워하기보다 피식 웃는 일이 많아졌다. 훌륭한 상담가가 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걸 ‘살짝 비뚤어진 상담가도 괜찮지’ 하는 생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제야 숨을 좀 쉬려는 건지 원.

사실 성폭력은 이제 내게 직접적인 상담소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부채의식과 그에 대한 해소 작업은 내 나머지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해 말하기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아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공감 받으면서, 생존자들은 안전함을 느끼며 성장한다. 이런 경험과 과정은 다른 경험에 대해서도 용기를 갖게 만들고, 우리가 자

신과 세계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누구에게는 최소필요조건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뜻은 여러 가지일 것이나, 음 마니 반메 흠..^^

약물과 성폭력

유영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이 끊임없이 제조되는 가운데,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도 가해 시 약물을 사용한 피해를 상담한 경우가 있었고,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례연구에서는 특히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알려진 마약류 약물과, 그로 인한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코올이 약물류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약물’을 술을 제외한 마약류 약물로 한정하여 지칭하였다.

다양한 약물의 확산과 위험

한국에서는 약물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신고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많은 사례들이 수면 아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고, 그 유통과 파급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약물 GHB(감마수산낙산염 Gamma Hydroxy Butyrate)의 경우, 알려진 국내 첫 적발 사례

는 1998년이다. 당시 신문기사 등에 이미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Date Rape Drug)” 또는 “물뽕”으로 표현되며 그 위험에 대해 다소 선정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적발 3년 만인 2001년에야 한국 식약청은 GHB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다른 마약류에 대한 지정과 단속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신종마약이 음지에서 퍼지는 탓에 특정 약물을 지정하고 단속하는 속도가 파급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전체 마약 적발률은 매년 꾸준한 상향추세를 보인다. 이는 세계적 마약 파급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유엔(UN) 산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2011년 공식적으로 성범죄에 이용되는 다양한 약물을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통칭, 분류하고 그 확산을 경고했다. 대표적인 약물은 앞서 언급한 GHB를 비롯, 로히프놀(Rohypnol), 케타민(Katamine), 엑스타시(또는 MDMA, 환각제) 등이다. 이들은 주사나 흡입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고, 색과 냄새, 맛이 거의 없다. 또한 가루, 알약, 액체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쉬워 범죄 타겟의 음료 등에 몰래 섞기 좋아 클럽이나 술집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파티 약(party drug)’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마약은 체내에서 특히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을 일으키며, 아마추어에 의한 오용은 사망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들 약물을 수입, 직접 제조하거나 전화, 온라인, 택배 등으로 매매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약물이 파급되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지만,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약물 피해 사례들

약물을 사용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의 문제점은 이들 약물의 사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 약물을 몰래 술이나 음료에 타는 등의 수법이 가장 흔한 만큼 피해자조차 피해 직후 자신의 피해가 약물로 인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단 피해자가 약물에서 깨어나더라도 심한 복통과 구토, 두통과 심신 무력 등의 부작용 탓에 곧바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평소처럼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은 길어야 48시간 정도로 짧아*, 빠른 시간 안에 약물반응을 검사하지 않으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약물의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 후 며칠 지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마약류 약물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염두에 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상담소의 지원 사례 중에도 약물로 의심되는 피해가 있지만, 수사기관에는 단순히 술로 인한 피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소가 며칠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직접 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의 약물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소가 지원한 사례 중, 가해자가 불법 약물에 관심을 보인 온라인 기록이 존재하고, 피해자 평소 주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약물 사용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의 피해자는 피해 직후 심한 복통과 두통, 구토에 시달려 운신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사건 며칠 후 검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는 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 피해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 케타민은 24시간이 지나면 혈중에서 사라지고 소변 속에는 48시간까지 잔류하며, GHB는 4~5시간 후 혈액에서 사라지고 소변에서는 12시간까지 검출된다. 로히피놀은 4~6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남아 있지 않으며, 소변에는 48시간까지 남아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법 향상 워크숍(부록) The Pennsylvania Sexual Assault Legal Advocate's Handbook(펜실베이니아 성폭력대책 법률지원 지침)>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방지본부(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자료집 2013-7, 2013년 10월), pp.64-66.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빠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기억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당한 것은 아닌지, 기억나는 용의자 이외에 다른 가해자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자신이 가해에 협조한 것은 아닐지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덮쳐오는 불안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사후 대응을 방해한다. 피해자가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떠올리지 못할 때의 공포와 그로 인한 사건 대응에 대한 회피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가해 당시 피해자의 음성을 녹취했다.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는 가해자가 묻는 말에 “응”이라고만 대답했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만을 던져 피해자의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는 상태, 마치 피해자 자신이 사건의 제3자인 것처럼 의식이 깨었으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전형적인 준강제추행, 준강간 피해시의 특징이다. 법률전문가인 가해자의 변호사 역시 위와 같은 증거물이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유용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 가해자의 수법은 역으로 가해자의 가해 의도를 강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남긴 것이기도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한편 주로 술집이나 유흥가 등지에서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감이 사후대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법정에서 성폭력가해자측은 피해자 유발론을 흔히 끌어들인다. 당일 피해자의 옷차림과 화장, 행동과 태도가 만일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이다. 유흥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동석했던 한 가해자는, 짙은 화장에 어두운 색 의상

을 입었던 피해자의 당일 행색에 대해 법정에서 “무서웠다”고 진술해 지원자들을 실소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은 이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회적 편견을 자극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편견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자극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자극적 재생산보다 진지한 개선 노력이 필요

이처럼 분명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응이나 사건해결 매뉴얼은 우리 사회에서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뒤덮었고, 대중의 관심도 폭발적이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약물 사용을 주장한 것이 사건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언론조차 성폭력에 사용된 마약류 약물을 “최음제(催淫劑, Aphrodisiac)”라고 통칭하여 표기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건의 근본을 흐리고, 상호 간음의 여지를 부각하여 교묘하게 사건을 왜곡하는 형편이다. 특히 대중의 관심에 대해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의 대응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길 수 있다. 가해에 대해 상상적 공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두려움 없이 밝히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 및 대응 개선을 위한 각계의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투 마더스

불안정하지만 아름다운 균형

황미요조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릴과 로즈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의 아들들이 장성한 지금까지 단짝으로 지내왔다. 그녀들의 아들 이안과 톰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성장기를 함께 보냈다. 릴의 남편은 아들 이안이 어릴 때 사고로 죽었고, 이안은 릴과 로즈가 거의 함께 돌봐 왔었기에 이 넷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아름답고 외떨어진 바다 옆 절벽에 나란히 지어진 두 집과 해변을 오가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낮에는 해변에서 수영하고 서핑하고 밤에는 파도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보드게임을 하고 춤을 춘다. 어느 날 이안이 로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톰이 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난 후 로즈와 이안, 그리고 릴과 톰은 각각 연인이 된다. 처음에 릴과 로즈는 이 관계에 대해 부정하고 싫어하지만, 곧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네 사람은 서로 친구이고 연인이고 (유사)가족인 이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과 평화를 느낀다.

앤 폰테인 감독의 <투 마더스>는 도리스레싱의 단편소설<Grandmothers>를 각색한 영화이다. 원작 소설과 영화 <투 마더스>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 든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행복,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릴-로즈’ 두 여성의 관계이다. 영화의 앞부분에서 릴은 서핑을 하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랬었나?”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이것이 서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때 그녀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두 아들의 젊고 탄탄한 몸이다. 톰과의 관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릴은 이렇게 말한다. “싫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사실은 좋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도리스레싱이 80대에 쓴 단편소설이 여성의 ‘나이 들’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한다면 영화는 상대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두 여성의 관계에 더 집중한다. 이미 아들들이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 할머니가 된 릴과 로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한편, 앤 폰테인의 영화는 단짝이었던 릴과 로즈의 어린시절부터 시작한다. 로즈가 이안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도리스레싱의 소설에서는 ‘나이에 걸맞을 만한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말로 로즈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영화에서는 톰이 결혼하고 혼자 남겨진 릴에 대한 로즈의 연대(solidarity)로서의 선택이었다는 암시가 크다.

영화의 관심이 릴과 로즈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나 기타 다른 등장인물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도구화된다. 이안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정해졌고 앞으로 평탄하게 흘러가리라고만 생각했던 나이의 여성에게 갑작스레 찾아

은 로맨틱하고 섹슈얼한 사건과 그것이 일상에 부여한 새로운 생기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릴은 다른 사람의 구애에 대한 거절마저도 로즈를 통해 대신할 만큼 진지함과 결단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한없이 진지한 이안의 연정에 비해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고 즉흥적인 톰의 구애는 그 진심을 의심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릴에게는 더 편안하고 어울리는 관계를 만들어 준다. 이 영화에서 애초에 아들들의 진심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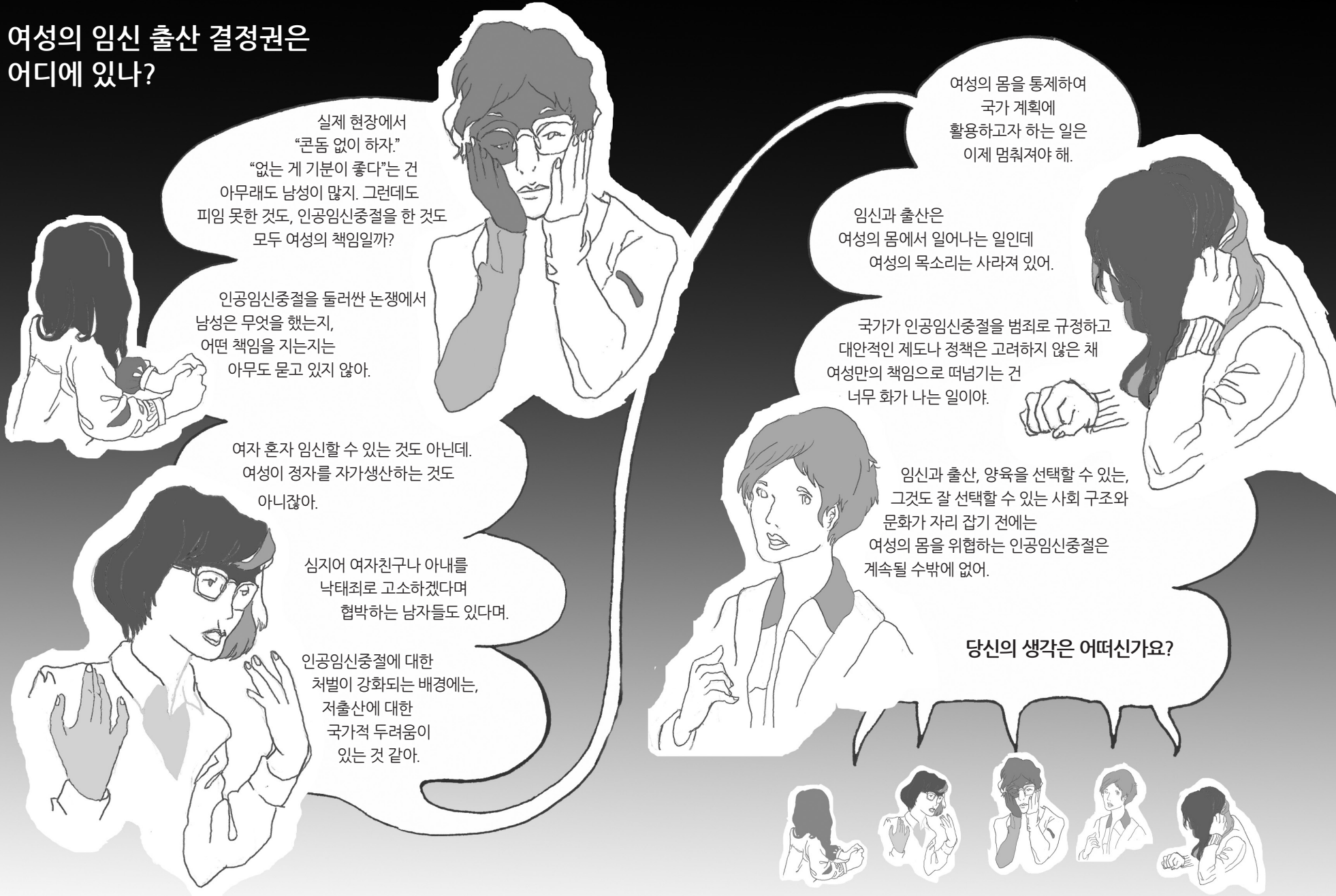
릴의 남편이 죽고, 로즈의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 대도시 시드니로 간 이후에 이 관계가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다. 릴과 로즈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레즈비언 사이가 아닌지 의심 받아 왔었고, 로즈의 남편은 시드니로 가기 전에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새로운 직장이 결정되어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남편에게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서운해 하는 로즈에게 낯선 인상을 받는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중요한 의는 상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한 번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시 그녀의 문제는 '사전의논' 보다 톰이, 이안이 그리고 릴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 곧 밝혀진다.

〈투 마더스〉는 선정적이기 보다 나이 든 여성의 기묘하고 우화 같은 판타지이다. 인생에서 더 크게 바랄 것도 없는 시기에 거의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고, 그 가장 친밀한 사이와 또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에서 적당하게 섹슈얼한 긴장과 쾌락 역시 즐기고 있다. 호주 사우스웨일즈의 파라다이스 같은 풍광은 이 이야기의 달콤함을 배가시키는 한편 관객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면서 판타지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관객에게 로즈와 이안의 은밀한 눈길 주고 받기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과 이 넷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존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푸른 바다 한 가운데 둥둥 떠 있는 데크에서 촬영된 것은 단지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지만 기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행복 - 그것을 영화는 멋지게 시각화 하였다.

4

권말코너
인공임신중절 처벌에 대한 만평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은 어디에 있나?



실제 현장에서
“콘돔 없이 하자.”
“없는 게 기분이 좋다”는 건
아무래도 남성이 많지. 그런데도
피임 못한 것도,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도
모두 여성의 책임일까?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논쟁에서
남성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아무도 묻고 있지 않아.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이 정자를 자가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여자친구나 아내를
낙태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남자들도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국가 계획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성의 목소리는 사라져 있어.

국가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대안적인 제도나 정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야.

임신과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잘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는
여성의 몸을 위협하는 인공임신중절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림: 백주(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이번 호 권말코너는 낱말퍼즐 대신 **인공임신중절 처벌에 대한 만평**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천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주소 _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3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버들, 강영인, 강푸른, 고진, 고진, 구민지, 권은숙, 김나영, 김수진, 김중웅, 김지찬, 김진욱, 김희정, 나신, 나무미, 나윤경, 박종주, 박지아, 박지현, 방이슬, 방이슬, 백혜량, 양무현, 우광재, 이경미, 이경미, 이동화, 이병래, 이옥영, 이태호, 전세화, 정경자, 정병훈, 조순경, 최강현, 최영숙, 한지숙, 황유나

2013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후원해 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민희,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인, 강영화, 강인화, 강정희, 강지아, 강푸른, 강현구, 강현주,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장남, 고정삼, 고진, 고화정, 고효주, 광경화, 광옥미, 광옥미, 광현지, 구민지, 구민희, 구분준, 권구홍, 권기욱, 권길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샘이, 권소영, 권오란, 권은숙, 권인선, 권인숙,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금진, 김기해, 김나연, 김나영, 김난형, 김다미, 김다운, 김대근, 김대숙, 김도홍, 김동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숙, 김보래, 김문빈, 김문찬, 김미경, 김미라, 김마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성,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연, 김보화, 김삼미, 김상정, 김상호, 김선훈, 김서화,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에,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상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중, 김세훈,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아름, 김아리, 김애라, 김양자, 김열림,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용백, 김우혁,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민,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은진, 김의창, 김이슬, 김인에, 김인혜, 김일륜, 김재원, 김재윤,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란, 김정혜, 김중수(권상범), 김중웅, 김중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김태리), 김진숙, 김진옥, 김차연, 김채주, 김태환, 김태설, 김태연, 김택진, 김하나, 김하정, 김한상, 김현경,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순,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나경미, 나미나, 나선영, 나성일, 나신, 나무미, 나윤경, 나유희, 나인선, 남길식,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보람, 노복미, 노선아,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중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숙영, 문지영,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옥, 박경훈, 박다위, 박덕인, 박명숙, 박명식,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연,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수, 박영주, 박윤경,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인기, 박인필,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종선, 박종주, 박준면,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진표, 박창정,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희, 박혜진,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재, 방이슬, 방경,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순, 백선희, 백세희, 백인에, 백지선, 백진현, 백현, 백혜량, 변계희, 변순임,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범일, 서복련, 서순진, 서영주, 서에린, 서용원, 서운숙, 서정에, 서정연, 서정표, 서정훈, 서정희, 서태자,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손경아, 손기주, 손명규,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손희정, 송민성, 송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호규, 숲, 송명식, 신경우, 신경혜,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원제, 신윤진, 신은계, 신은주,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지혜,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희승, 심소영, 심수희, 심진설,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윤경,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조룡, 안하영, 안하영, 안행운, 안홍신, 안홍진, 안홍자, 양동홍, 양무현,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정, 양영희, 양우준, 양유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엄인숙, 오경희, 오미근, 오선근, 오세희, 오송환, 오승민, 오승이, 오유선, 오정진, 오정희, 오지영, 오진아,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원,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실, 유걸,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연, 유세경, 유숙주, 유여원, 유예리,

유재영, 유정호, 유지혜, 유혜숙, 유환숙, 옥상근, 윤나래, 윤다림, 윤범석, 윤소정,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훈, 윤용미,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종옥, 윤준섭, 윤지연, 윤희영,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미, 이경미, 이경선, 이경숙,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갑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다운, 이다정,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민정, 이민희, 이민희, 이병래, 이병주, 이보라, 이보윤, 이부덕, 이사랑, 이상근, 이상연,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 이상록, 이서지, 이선영, 이성수, 이성아, 이성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권승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연, 이수영, 이승구, 이승숙, 이승은, 이승진, 이신정, 이안,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옥영, 이원홍, 이우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옥,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경,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임혜경, 이재순, 이재원, 이정미, 이정봉,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연,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충원, 이태숙, 이태호, 이한종태, 이혜사랑, 이향신, 이향화, 이현숙, 이현희, 이혜정, 이혜일, 이혜정, 이혜진,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호연, 이화자, 이희경,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유영, 임유정, 임자영, 임주연,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치순,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중, 장재운, 장정희, 장중순, 장진, 장혁일, 장혜란, 장효정, 전동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승기,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성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화정, 정경수, 정경아,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구민, 정귀원, 정다미,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명중, 정보영, 정민이, 정병훈, 정보람,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수연, 정숙경, 정순희, 정슬아,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식, 정윤경, 정은선,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숙,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혜량, 정현, 정현주,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순경, 조영선, 조윤경, 조윤주,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설,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옥, 조정은, 조중선, 조지혜, 조진희, 조현아, 조혜민,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숙, 지현우, 진세록,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숙,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원숙, 천정환, 최강현,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옥, 최대연, 최대용, 최동석, 최란,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시연, 최신혜, 최아림, 최연순, 최영숙,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용범,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순,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민, 최정운, 최정은, 최정민, 최정희, 최정희, 최지나, 최지나, 최지영,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혜인, 춘옥, 코니, 하다영,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수선, 하수현, 하진옥, 한겨아, 한계영,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라금, 한복옥, 한수연, 한승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정, 한지숙, 한재운, 한희정, 함경진, 허정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은주, 허이화, 허정연, 허정희, 허정익,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난영,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승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보선경, 황성기, 황성일, 황승희, 황승경, 황유나, 황은순, 황재호, 황정임,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운, 100주년기념교회, 더트리그룹(주), 법무법인 원, 재단법인 동천, 존타클럽, 토란어린이집,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랑마음, 한국아마자카미작(주), 한전부녀회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사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연,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운진, 권익숙,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삼화, 김선영, 김소연, 김에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경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김희정,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넷,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인필, 박지만(주식회사 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송미현,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정, 심공채, 안백린, 안지혜, 안채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명규, 이병우, 이상구, 이상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우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란,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장동배, 정몽훈(주효광), 정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향,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민, 천정환,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청담마리산부인과, 한국유티크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백미순

만든이 _ 최영지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3년 12월 3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1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계몽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